

심사보고서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72
----------	-----

2023. 9. 7.(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8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30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9월 7일

-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가. 제안사유

- 청남대관리사업소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현대엔지니어링)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7. ~ 10.
- 설치장소: 청남대 민원인 주차장 내 8면
- 사업비
 - 옥외 전력간선인입비 : 124,154천원(청남대 부담-2023 예산)
 - 충전설비 : 현대엔지니어링(주) 부담(한국환경공단 지원사업)
- 사업량: 105kw(2CH) 급속충전기 1대, 7kw 완속충전기 2대
- 수행기관: 현대엔지니어링(주)(구축·설비 총괄 운영)
- 주요내용: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전소 부지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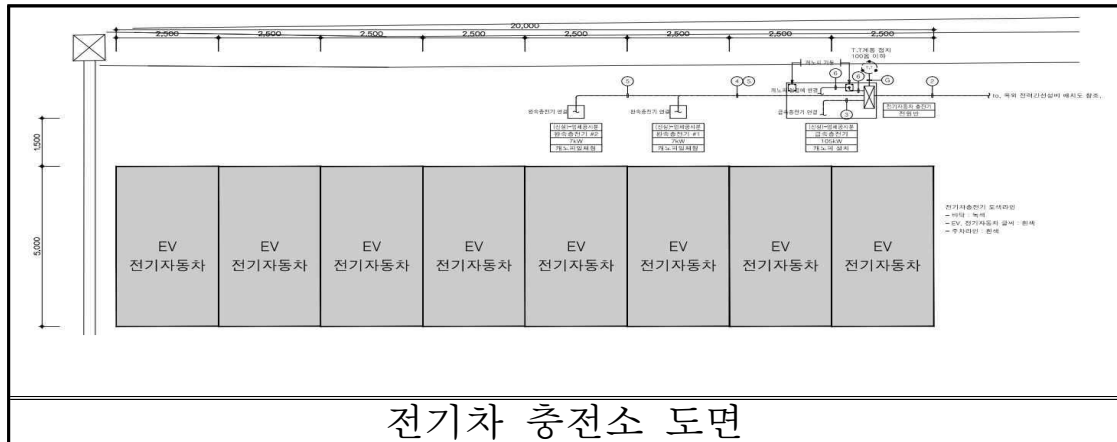
□ 참고사항

- 충전소 설치 관련 업무협의(설치위치, 전력설비 등): 4.28.
-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브랜드사업 수요 제출: 5.17.
-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한국환경공단→도): 7.17.
- 공용전기차 충전소 구축(설계, 시공, 준공): 5~12월
 - 설계 및 점용허가(7~8월), 시공(9~10월)
 - 준공 및 서비스 시행(11~12월)
- 충전기 설치 예정지



민원인 주차장 내 8면 설치

○ 충전기 설치기준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본건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브랜드 사업” 공모에 사업수행기관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청남대 전기차 충전취약지역 충전인프라 확대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대상지로 청남대가 확정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설치부지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 본건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21조(사용허가기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사용허가의 방법)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기간 내에 105kw(2CH)급 급속충전기 1기, 7kw급 완속충전기 2기를 주차면과 함께 구축하는 것임.
- 충전설비의 구축과 설비 총괄 및 사업비는 국고 지원을 받은 사업수행기관이 현대엔지니어링(주) 전액 부담하고 충전소 부지(청남대 민원인

주차장 내 8면) 제공과 충전설비의 전기공급을 위한 옥외 전력간선인 입 공사(2023년 예산)는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이며, 그 외 사용료, 사용기간 등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간의 협약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본건 공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정책과 지역 특성에 맞춰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을 연계하기 위해 지자체,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의 유형을 찾기 위한 공모사업의 목적 부합한다고 판단 됨.
- 또한 전기차를 이용하여 청남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 해당 전기차 충전소는 공용으로 청남대를 방문한 관광객 및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후 사용 및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하여야 할 것이며, 청남대에 설치된 시설물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의안 번호	372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청남대관리사업소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 제2항에 따라,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현대엔지니어링(주))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한국환경공단 '23년 공용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 최종 선정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7. ~ 10. ※사업비 : 124,154천원(옥외 전력간선인입비)
- 설치장소 : 청남대 민원인 주차장 내 8면
- 사업량 : 105kW(2CH) 급속충전기 1대, 7kw 완속충전기 2대
- 수행기관 : 현대엔지니어링(주) ※구축·설비 총괄 운영(충전설비 무상설치)
- 주요내용 :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전소 부지제공

3. 참고사항

- 충전소 설치 관련 업무협의(설치위치, 전력설비 등) : 4. 28.
- '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브랜드사업 수요제출 : 5. 17.
-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한국환경공단 → 도) : 7. 17.
- 공용 전기차 충전소 구축(설계, 시공, 준공) : 5~10월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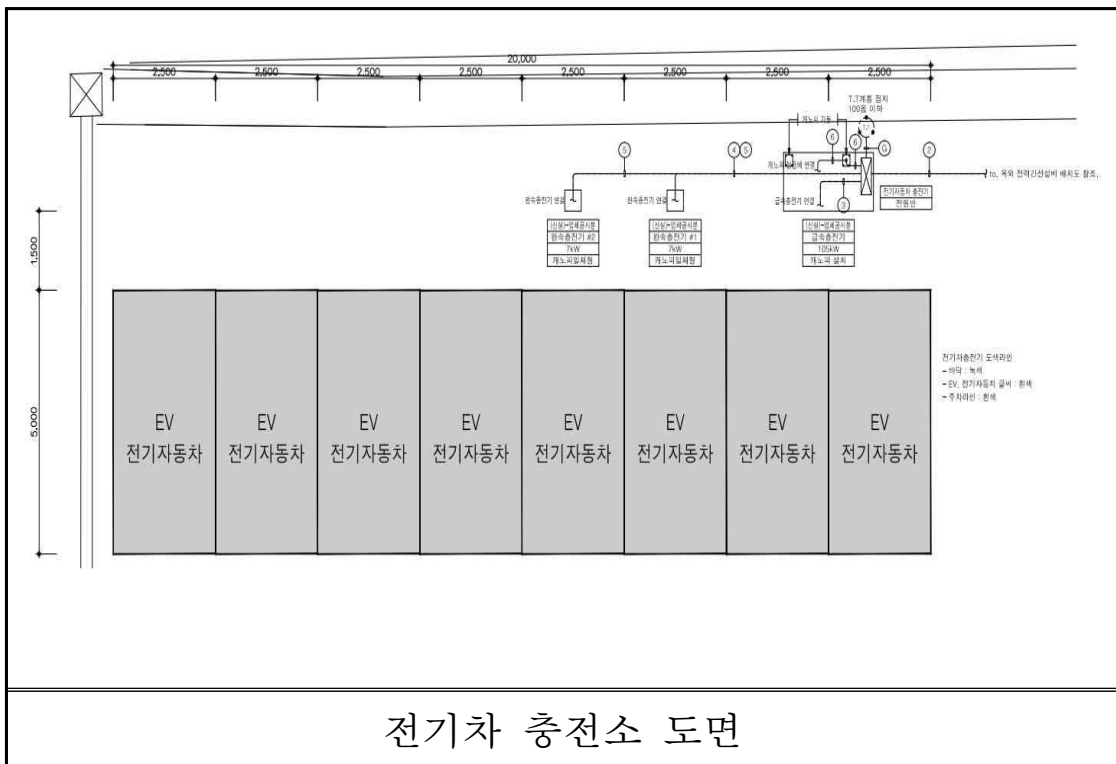
5. 기타

○ 충전기 설치예정지 현장사진(청남대관리사업소)



민원인 주차장 내 8면 설치

○ 설치기준



전기차 충전소 도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